

Ver. 0.1 (2022.08.10)

the way to trust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rea Conformity Laboratory

〈환경측정기기 간이측정기〉 인증신청 및 처리규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기환경센터

☐ ☐ **목 차** ☐ ☐

1. 개 요	1
2. 인증업무 처리절차	1
3. 인증신청 및 제출자료 안내	2
4. 인증 수수료	3
5. 성능평가절차	4
6. 성능인증의 표시	10
7. 인증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10
8.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절차	11
9. 인증 취소에 대한 사유	12
10. 인증기관 인력 및 연락처 정보	12
별첨 : 1) 공정성 보장 선언	13
별첨 : 2) 성능인증신청서(양식)	14

1

개요

□ 법적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 시행일 : 2022. 08. 18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5(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인증대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 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대기) 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오존 항목 / (실내공기질) 이산화탄소·라돈 항목



2

인증업무 처리절차

□ 인증 프로세스



*반복성, 직선성 평가 중 '등급 외' 항목 있는 경우 실외시험 미실시

□ 신청 및 접수절차

① 성능인증 신청자는 ‘환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6 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 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성능인증 신청서’ 별첨 참조

② 상기 ①항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및 설명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 실무자는 신청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경우, 신청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청 첨부서류

○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 표시)
2. 모델명 및 형식(센서 모델명 및 원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측정센서를 포함한 주요 부속에 대한 제조사 및 모델명(사진포함)
4. 성능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 성능시험(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과 외부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을 포함한다)의 결과(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1. 일반적인 기기 작동 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방법
2. 기기 유지·관리 방법(교정 방법 및 핵심부품 교체 등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품사양서(규격서) 및 성능시험결과(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 또는 외부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을 포함한다)

○ 반복성 또는 정밀도, 직선성 또는 정확도,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등

- ③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신청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서류를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신청서류 검토 결과,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접수처리가 완료된다.
- ⑤ 접수내역 통보 시, 인증기관은 시료제출 방법과 시기, 실외 평가를 위한 현장설치시기를 안내한다.

4

인증 수수료

- ① 성능인증 수수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검정수수료’에 따른 법정 수수료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실내)	성능시험 (실외)
가. 대기분야	1) 이산화질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23,000	2,286,000
	2) 일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81,000	2,285,000
	3) 오존 측정용 간이측정기	955,000	2,285,000
나. 실내공기질 분야	1) 이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23,000	2,286,000
	2) 라돈 측정용 간이측정기	722,000	2,286,000
* 비고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② 성능인증 신청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납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 검토를 진행한다.
- ③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5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④ 인증신청내용 검토 중,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측정기기로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 규정에 따라 과오납 처리하여 반환할 수 있다.
- 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22-46호)’ 제 4조(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의 4항에 따라 반복성, 직선성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의 등급이 등급외로 분류된 경우에는 실외 시험의 상대정확도 수수료(2,286,000원 또는 2,285,000원)를 반환한다.

☞ 기업은행 497-052789-04-821(예금주:(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

※ 입금 시, 성능인증신청서에 작성한 상호(사업장명)으로 입금.

□ 성능평가 등급

○ 성능인증평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22-46호) [별표 2]’ 에 따라 실내시험실에서의 시험챔버평가(반복성, 직선성)와 실외 시험에서의 상대정확도로 구분한다.

○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 반복성, 직선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 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정확도 항목은 평가제외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10.00 %	≤ 15.00 %	≤ 30 %
등급 외	> 10.00 %	> 15.00 %	> 30 %

2.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

가.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10.0 %	≤ 15.0 %	≤ 30 %
등급 외	> 10.0 %	> 15.0 %	> 30 %

나. 라돈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지시오차(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20 %	≤ 20 %	≤ 30 %
등급 외	> 20 %	> 20 %	> 30 %

비고

-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 외로 한다.
- 실내시험은 향온·향습이 유지되는 시험실 등 외부 환경영향이 철저히 통제된 장소에서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
- 실내시험 항목 중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시험을 하지 않고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 외로 판정할 수 있다.

- 성능인증 신청인은 성능인증기관에 3대의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성능평가 방법

- 성능인증평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22-46호) [별표 2]’ 에 따른다.
- 아래 장비를 이용하여 실내 시험 및 실외 시험을 진행 한다.



<실내 이중 체임버>



<실외 시험>

□ 성능평가 결과보고

- 우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성능인증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cl.re.kr)에 공개됩니다.
 - ☞ ‘사업안내’ 메뉴=> ‘시험/검사’ 메뉴=> ‘환경측정기기 검사’ 메뉴
- 성능인증서와 성능인증마크의 QR코드에는 간이측정기 사진과 성능인증 등급 평가 항목인 반복성, 직선성 및 상대정확도가 표시됩니다.

6

성능인증의 표시

-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4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2의 5]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간이측정기 전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명/최초 제조일자 :
(측정분야/항목)	성능인증 번호/인증 일자 :
(성능인증 등급)	검사기관 :

- 성능인증 등급표지의 재질은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 성능인증 등급표지에 표기되는 글자가 지워지지 않게 인쇄 또는 각인한다.
- QR코드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며, 도안은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인증기관이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성능인증 등급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다음의 사유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급표지와 내용을 수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라도 소재·부품·프로그램의 변경이 성능인증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능인증평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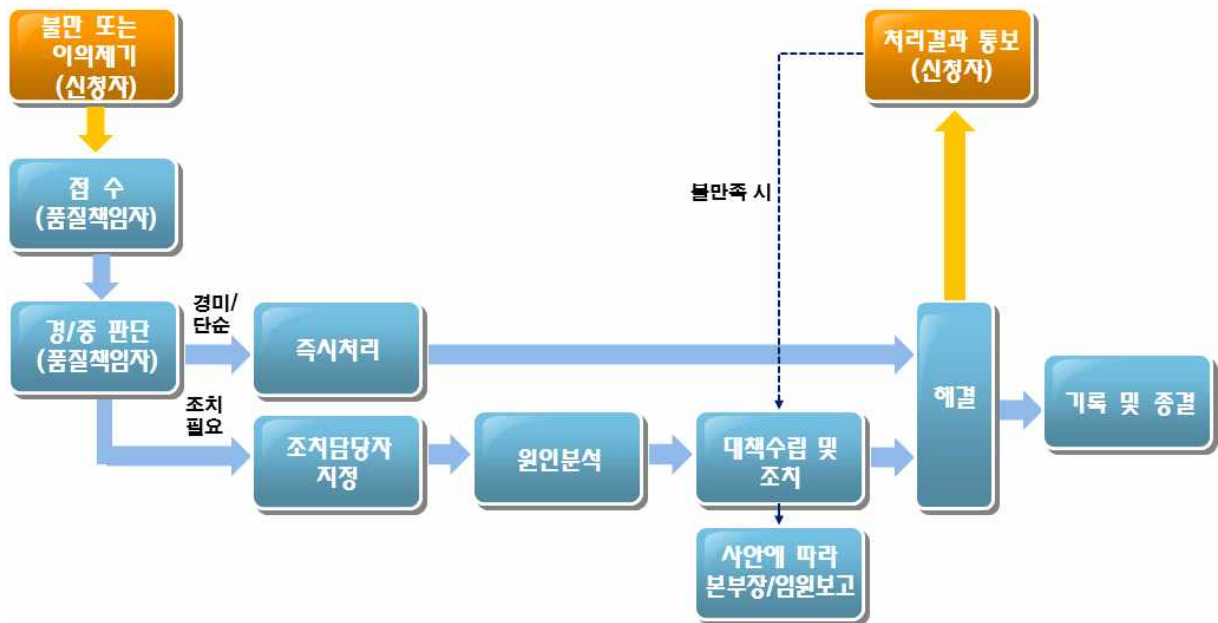
인증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인증신청자는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인증수수료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단, 평가에 착수한 경우, 인증수수료를 반환할 수 없다.
- ② 성능인증 신청 후, 신청자가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성능인증 평가에 착수하기 전 : 기존 인증신청 내용을 철회하고 재신청
 - 성능인증 평가에 착수한 후 : 변경사항과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인증신청자에게 요청하며, 변경된 사항의 소재·구조·프로그램 등이 성능인증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변경사항 승인

- ③ 성능인증 신청인은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기관의 기술지원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④ 성능인증 등급표지는 인증된 제품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기관이 인증받은 것으로 홍보, 선전할 수 없다. 또한, 서류, 홍보자료, 명함, 견적서 등에 성능인증등급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⑤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위임한 기관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불특정 다수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측정기 현황(성능, 정도관리 상태 등)에 대해 사후조사 할 수 있다.
- ⑥ 인증취소 사유(본 규정 제9조 참조)가 발생된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 규제기관에게 보고 및 홈페이지에 인증취소 결과가 공지된다.
- ⑦ 성능평가 종료 후에는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직접 반환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폐기될 수 있다.

8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에 대한 절차

○ 불만¹⁾ 및 이의제기²⁾ 프로세스



○ 접수처 : KCL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시스템운영책임자(지창민 센터장)

- Tel : 043-753-3102, Fax : 043-753-3182, E-mail : kjich@kcl.re.kr

1) 불만(Complaint) : 신청자가 인증기관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

2) 이의제기(Appeal) : 신청자가 인증기관이 내린 결정(등급판정)에 대한 재고(Reconsideration)를 요청하는 것

9

인증취소에 대한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하고 즉시 홈페이지에 취소내용을 게시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② 성능인증시험에 적용된 소재·구조·프로그램 등이 변경되어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등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③ 구매자가 오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인증서 및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사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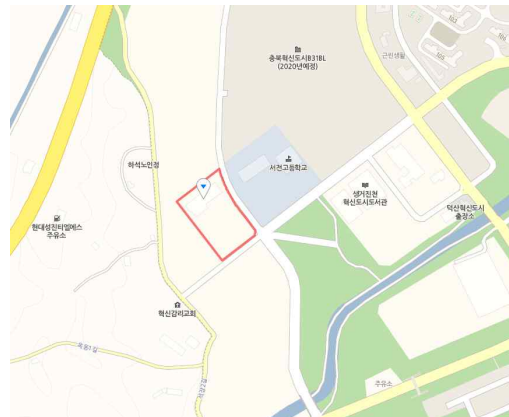
10

인증기관 인력 및 연락처 정보

- 접수 및 성능평가 : 이경수 선임, 이민정 선임
 - ☞ 연락처 : Tel 043-753-3181, Fax 043-753-3109 E-mail : kslee@kcl.re.kr
- 인증기술책임자 : 이상구 책임
 - ☞ 연락처 : Tel 043-753-3101, Fax 043-753-3109 E-mail : smkicm@kcl.re.kr
- 인증운영책임자 : 공기환경센터 지창민 센터장
 - ☞ 연락처 : Tel 043-753-3102, Fax 043-753-3109 E-mail : kjich@kcl.re.kr
- 접수증 및 계산서 : 이윤정 연구원(043-753-3100) E-mail : yjlee113@kcl.re.kr
 - ☞ 수수료 입금계좌 : 기업은행 497-052789-04-821 (예금주:(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

▶ 오시는 곳) 충북 진천군 덕산면 여안로 13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어필터동
(충북혁신도시 내, 서전고등학교 옆)

-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왕꽃동네 IC'에서 약 7km
- 중부고속도로 '진천IC'에서 약 6km



공평성 보장 선언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간이측정기 인증업무’ 관련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증업무는 공평하게 수행하고 신청업체 규모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인증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인증업무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한다. 이는 인증기관 활동, 인증기관과 신청기관의 관계, 인증기관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포함한다.
4. 우리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가 파악되면,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5. 우리는 자체개발 하였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여 개발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는 인증신청을 받지 않는다.
6. 간이측정기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을 받지 않는다.
7. 인증업무 수행 인력은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 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2022. 08. 2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간이측정기 인증기관 운영책임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제조사	제조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 오차범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

210mm×297mm[백상지 (80g/㎡)]